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

공 시 최 고

사 건 2007카공 14 공시최고

신 청 인 원 영 기(670925-*)

경남 함양군 안외면 이전리 127-3

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,
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07.
8. 20. 14:00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
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.

단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
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2007년 5월 11일

판 사 신 영 희

(증서의 중요한 취지)

종 류	번 호	금 액	발행일	발행인
자기완 수 표	라가00710729	금1,000,000원	2007. 4. 25	함양 안외두세국